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118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(세액공제) 확대와 구세 감면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(안 제14조의2)

-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 : 250원 ⇒ 800원
-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: 600원 ⇒ 1,600원

나.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규정 삭제(안 제2조)

-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경감률 직접 규정

다.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한 연장(안 부칙<조례 제1278호, 2019.12.26.> 제3조)

- 2022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, 제38조, 제9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10. 6. ~ 10. 2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- 5)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2. 11. 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“250원”을 “8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600원”을 “1,6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<조례 제1278호, 2019.12.26.>

제3조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14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u>250원</u></p> <p>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<u>600원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4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800원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1,600원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</p>

부칙<조례 제1278호, 2019.12.26.>
제3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22년 1
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다만, 제2조는 「지방세특례제한
법」 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
따른다.

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
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
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
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<조례 제1278호, 2019.12.26.>
제3조(적용시한) ----- 2025년
12월 31일-----.
<단서 삭제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
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재정관리국 재산세과 김나진 (☎ 02-3153-8715)